

<별첨> 개인신용대출 약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2조 (대출조건)</p> <p>채무자의 대출금, 이자, 수수료, 대출기간,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<u>법령</u>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,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.</p>	<p>제2조 (대출조건)</p> <p>채무자의 대출금, 이자, 수수료, 대출기간,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<u>법규</u>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,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.</p>	<p>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통일(지구수정)</p>
<p>제4조 (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자·분할상환금·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, ----- ----- -----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><u>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 된 율을 적용하기로 하며, 최종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전체 연체기간에</u></p>	<p>제4조 (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이자·분할상환금·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, <u>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</u>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>(삭제)</p>	<p>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반영 (18.4.30)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u>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</u></p> <p>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, <u>곧</u>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	<p>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, <u>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</u>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	
<p>제5조 (비용의 부담)</p> <p>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<u>법령</u>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5조 (비용의 부담)</p> <p>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<u>관련 법규</u>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통일(지구수정)수정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7조 (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<u>법령</u>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③ <u>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기로 하되,</u>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.</p>	<p>제7조 (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<u>법규</u>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③ <u>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실제 대출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며,</u> 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개정 대부업법시행령 반영 (14.9.19)</p>